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황 희·이용선·어기구

한민수 · 김태년 · 진선미

이훈기 · 문대림 · 이학영
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·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+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 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,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(이하 '최소주택 규모')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.

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,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,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 지 제한되어 있어 1+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얻은 1+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,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재개발·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른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주택에	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		
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			
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			
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			
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			
금액을 그 세액(이하 "주택분			
종합부동산세액"이라 한다)으			
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</u>		
	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라		
	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		
	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같은		
	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		
	에 따른 1주택은 주택 수에 포		
	함하지 아니한다.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		